

결혼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라승현 인턴기자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에서 전국대학생 토론타회가 열렸다. 주제는 ‘현행 결혼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였다. 대학생의 관점에서 결혼제도를 다루는 대회인 만큼 주의 깊게 토론을 살펴보고 이내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반대측의 큰 주장은 현행 결혼제도는 동성애자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찬성측의 주장은 현행 결혼제도는 유지하되, 동성커플과 같은 사회 다양한 집단에게 생활동반자법을 통한 결합제도 등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반대측은 동성혼을 포함하기 위한 결혼제도 수정을, 찬성측은 동성애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제도

의 실질적인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두 입장 모두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성의 결합을 통한 결혼에 반대하는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찬성측이 말하지 않은 결혼제도의 가치는 무엇일까.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겠지만 한 가정의 자녀로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결혼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한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녀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인 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보호된다기 보다 자녀의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즉 자녀의 행복추구가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의 행복추구를 위해 가정단위에서 헌법이 명시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무엇일까. 바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결혼제도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등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단순히 권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결합을 통한 결혼이 전제되었을 때 보장되는 기본권인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교육에 대한 책임, 이를 통한 자녀의 행복 증진의 기초가 되는 현행결혼제도는 필요하다.

결혼제도의 가치인 자녀의 교육은 진화심리

학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수 있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결혼제도는 자신의 역량 즉 물질 자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원을 자녀에게 쏟게 해주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물론 현재 친부확인은 여러 과학적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결국 심리적으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제도적 울타리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자녀는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정 집단은 누군가의 자녀인 청년들에게 양성의 결합인 혼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록 충분하지 못할지언정 가정의 보호와 교육을 받아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다시 토론대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결국 대회는 결혼제도의 가치 보호를 주장했어야 하는 찬성측이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한 논리 모순으로 인해 패배함으로써 막을 내렸다.